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910
----------	-------

발의연월일 : 2026. 2. 20.

발 의 자 : 조은희 · 조승환 · 한지아
이만희 · 주호영 · 이성권
김용태 · 이인선 · 서명옥
신성범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시 일정 시설과 인력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을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등록 이후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최초 등록 이후 요건을 상실한 부실 기획사들이 영업을 지속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미등록 기획사들이 대중문화예술인 등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에게 사기 계약이나 정산 미이행 등의 피해를 입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부적격 사업자와 미등록 사업자의 불법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4항 및 제33조제1항

제2호의2 신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3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① ~ ③ (생략) <u><신설></u>	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u>④ ~ ⑥ (생략)</u>	<u>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u>
제33조(등록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2. (생략) <u><신설></u>	제33조(등록취소 등) ① ----- ----- ----- ----- ----- ----- ----- 1. 2. (현행과 같음) <u>2의2.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u>

3. (생략) ② ~ ④ (생략)	<u>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u>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